

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(제11조 관련)

1. 공설묘지

- 가. 분묘의 형태는 봉분(封墳), 평분(平墳) 또는 평장(平葬)으로 하되,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,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.
- 나. 공설묘지는 지형·배수·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·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다. 공설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,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라.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 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(沈砂池)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마. 공설묘지 면적 중 주차장·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- 바. 공설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묘지에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나 토지 또는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- 1) 「도로법」 제2조의 도로, 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, 「하천법」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
 - 2)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, 학교,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

2. 공설화장시설

- 가. 공설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(火葬爐室), 관리사무실,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, 분향실, 시신안치실,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나. 화장로실은 시신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,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·매연·분진·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, 개장한 유골(죽은 태아를 포함한다)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다.
- 다. 시신안치실은 시신의 보건 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를

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- 라. 유족대기실은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
되,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,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
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
3. 공설봉안시설

가. 공설봉안묘

- 1) 공설봉안묘는 사원·묘지·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
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2) 공설봉안묘는 지형·배수·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·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
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3) 공설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, 개폐가
가능하여야 한다.
- 4) 관리사무실, 유족편의시설,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, 그 밖의 필
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.
다만,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
로 한다.
- 5) 공설봉안묘지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
다.

나. 공설봉안탑 및 공설봉안담

공설봉안탑과 공설봉안담의 설치기준은 가목의 공설봉안묘에 관한 규정을
준용한다.

다. 공설봉안당

- 1) 공설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,
공설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.
- 2) 공설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.
다만,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
로 한다.
- 3) 관리사무실, 유족편의시설,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, 그 밖의 필
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4. 공설자연장지

- 가. 공설자연장지는 지형·배수·토양·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·침수의 우려가
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.

나.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된다. 다만, 기존의 묘지에 공설자연장지

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다. 관리사무실, 유족편의시설, 공동분향단,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라. 자연장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마.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, 개별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하,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.

5. 공설수목장림

- 가. 공설수목장림은 지형·배수·토양·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·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.
- 나.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된다. 다만, 기존의 묘지에 공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다. 공설수목장림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리사무실, 유족편의시설, 공동분향단, 주차장,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공설수목장림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.
- 라. 수목장림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마.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, 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.
- 바.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.